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0-01호

2020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공고

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0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5월 29일

(재)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

· 개요

1. 지원 목적

○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임상·인허가, 신의료기술평가·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

2. 지원과제 개요

○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'에서 확인

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				
세부분야	관리번호	RFP명	선정 과제수	협조기관 (접수처)
4-1-1.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	2020-4-1-1-1	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	69개 내외	
4-1-2. 맞춤형 인허가 지원	2020-4-1-2-1	의료기기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및 지원	2개 내외	한국보건
	2020-4-1-2-2	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	6개 내외	산업진흥원
	2020-4-1-2-3	의료기기 표준개발	5개 내외	
합계		82개 내외		

[※]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신청요건

1. 신청자격

II.

□ 연구기관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제5조 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 - 1. 국 공립 연구기관
 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 - 5.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 - 6.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·단체(「의료법」 제3조 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 - ※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.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 - ※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□ 주관/참여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
 - ※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, 과제신청 시 주관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
2.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및 기관의 장,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(3책 5공)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제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※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 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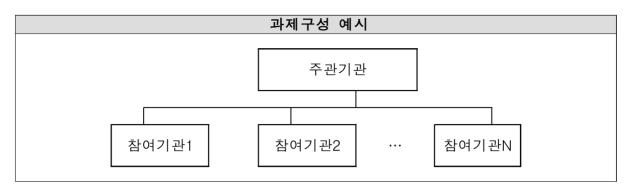
- ※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, 참조
 - 1.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, 3책 5공 중 연구책임자로 적용함
 - 2.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, 3책 5공 중 연구책임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, 공동 연구원으로 적용함
- 복수의 과제신청·선정으로 3책 5공 및 참여율 조건 미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책 5공 (참여율)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(첨부3)를 제출해야 하며, 최종 선정에 이를 고려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을 초과한 연구자
- 연구책임자(참여연구자 포함)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%(정부출연(연)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%)를 초과할 수 없음
- ㅇ 아래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

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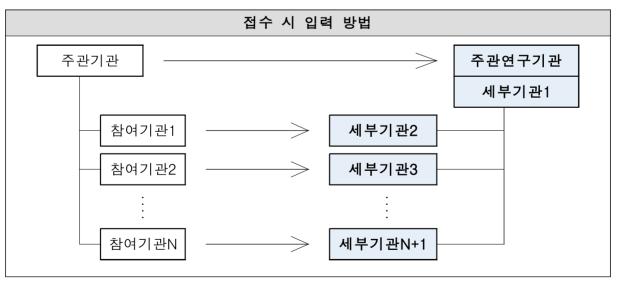
- 1. 주관연구기관, 협동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
- 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(재창업 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 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,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5.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(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)이 연속 500%* 이상인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- 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 길 기업은 제외)
-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 - *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- ※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3. 과제구성 안내

○ 2020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과제를 구성함



- 주관기관 :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- 참여기관 :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
 - ※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, 3책 5공 중 연구책임자로 적용함
 - ※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, 3책 5공 중 연구책임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, 공동연구원으로 적용함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하위에 위탁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()
 - ※ 시험·분석·검사·임상 등은 위탁연구를 대신하여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계상하여, 용역으로 수행이 가능함
- 과제 접수기관인 '한국보건산업진흥원'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기 바람



※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과제 선정평가를 위하여, 접수 및 평가 시에만, 한시적으로 주관기관은 세부기관1. 참여기관은 세부기관 2이하로 접수

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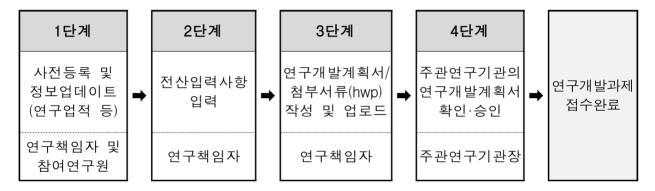
1. 전산입력 안내

 \mathbb{II} .

□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'R&D지원시스템 바로가기' 클릭
 - ※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'연구자 권한'으로 신청 가능

□ 신청절차

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서 참조

2. 전산 마감시간 안내

공고단위 (RFP명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시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시	
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		2020.6.30.(화) 18:00	
의료기기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및 지원	2020.6.29.(월) 18:00		
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	2020.0.23.(宣)10-00	2020.0.30.(♀1) 10.00	
의료기기 표준개발			

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시간(18:00) 엄수(마감시간 이후 연장 불가)

Ⅳ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□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 - 「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운영규정」의 요령 및 지침(평가 등) 제정 후, 협약 시 소급적용 예정
 - 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→ 관련법규에서 확인

V. 기타

□ 참여기업부담금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산정)

- 참여기업 부담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, 기관별로 지원받는 총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부담함
 - ※ 총 연구개발비[정부출연금+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)
-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함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 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 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. 해당 RFP 기준 적용
-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(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 12조 3항)

항목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	총 연구개발비	총 연구개발비	총 연구개발비
		대비 50% 이상	대비 40% 이상	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		부담액의 15%	부담액의 13%	부담액의 10%
현금 부담 기준		이상	이상	이상
참여기업 부담연구 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	참여기업 소속	현물 부담액의	현물 부담액의	
	연구원의 인건비	50% 이내	70% 이내	_
	직접비경비 중			
	보유하고 있는	연구기자재 및	연구기자재 및	
	연구기자재 및	시설비는	시설비는	
	시설비, 재료비,	인건비를	인건비를	_
	시작품 제작에	제외한 금액의	제외한 금액의	
	필요한 부품비,	50% 이내	70% 이내	
	기술도입비			

- ※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
- 1)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- 2)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·중견기업을 포함)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
- 3)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이고, 중소기업(연구개발 수요기업인 대기업·중견기업을 포함)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
-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R&D 긴급지원 방안(과기정통부 '20.4.10)에 따라 2020년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과제(신규/계속 포함)에 한하여, 중소/중견 기업이 납부하는 민간부담금 비중 및 현금비중 대폭 완화

기존			
출연기준	현금부담 기준		
▶ 중견기업 40%	▶ 중견기업 13%		
▶ 중소기업 25%	▶ 중소기업 10%		

□> 5% 인하

개선			
출연기준	현금부담 기준		
▶ 중견기업 35%	▶ 중견기업 8%		
▶ 중소기업 20%	▶ 중소기업 5%		

-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 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 채용 시, 현금부담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-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"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" 초과 채용 시 적용
 - ※ (예) 5억원 과제 2명 고용 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3명 고용 시 2명 인건비 감면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 1억원 미만)'를 작성·첨부하여 '사업단'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-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해야 함(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)
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기준은 공고문을 따르며,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
VI. 문의처

1. 홈페이지

- □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: www.kmdf.org
- 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: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, www.htdream.kr

2. 문의처

구분	소속기관	담당	연락처	홈페이지
RFP 문의	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(R&D 기획팀)	송승준	02-6328-0336	- www.kmdf.org
		서민지	02-6328-0338	
공고관련 사항	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(R&D 평가관리팀)	홍춘희	02-6328-0342	
		정영진	02-6328-0345	
평가일정(절차) 및 전산접수	한국보건산업진흥원 (의료기기R&D팀)	한정아	043-713-8113	
	한국보건산업진흥원 (R&D평가정보팀)	박유혁	043-713-8172	www.htdream.kr

- 붙임 1. 2020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서
 - 2. 2020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
 - 3. 2020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공통양식
 - 4. 2020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첨부서류 양식